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좌 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좌 동)	
1.~8. (생 략)	1.~8. (좌 동)	
9.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로 <u>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u>	9.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로서 <u>고객의 모바일 기기에 등록·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바이오정보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하여,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u>	- 용어 명확화 (서비스 이용 시 인증수단으로 활용 가능)
10.~14. (생 략)	10.~14. (좌 동)	
제3조(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이용대상) ①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기본 이용대상은 <u>만 14세 이상의 내국인 및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인 개인으로 하며, 법인 및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u> ②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확대사항 추가 - 이용대상 서비스 제한사항 추가
(신 설)		
(신 설)		
제4조 ~ 제9조 (생 략)	제4조 ~ 제9조 (좌 동)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조회) 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7조에 따라 <u>은행</u>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④ (생략) 제11조 (잔고이전·해지) ①~⑥ (생략) <u>(신설)</u> 제12조 (계좌지급정지) ①~② (생략) ③ 계좌지급정지시 해당 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계좌지급정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u>금</u>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조회) 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7조에 따라 <u>금융회사</u>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u>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부 계좌의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u> ③~④ (좌동) 제11조 (잔고이전·해지) ①~⑥ (좌동) ⑦ <u>잔고이전·해지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u> 제12조 (계좌지급정지) ①~② (좌동) ③ 계좌지급정지시 해당 계좌에 연결된 <u>자동이체가 중단되고</u>, 직불·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u>고객은 계좌지급정지 신청 전에 자동이체의 중단 및 그에 따른 납부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u>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계좌지급정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u>자산</u>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문구정비 - 이용대상 서비스 제한사항 추가 - 이용대상 서비스 제한사항 추가 - 자동이체 중단 안내 강화 - 법률 명칭 변경

현행	개정 (안)	비고
⑤ <u>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u> ⑥ <u>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u> 제13조~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u>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u> ① <u>은행, 우체국,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u> ② <u>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u> ③ <u>금융투자회사,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u> (신설)	⑤ <u>고객의 유효한 계좌지급정지 신청에 따라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또는 기타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지급정지 해제 처리가 누락,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u> ⑥ <u>계좌지급정지의 해제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제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u> 제13조~제15조 (좌동)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u>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u> 부칙 (2026. 10. 23.) <u>이 약관은 2026. 12. 10.부터 시행합니다.</u>	- 포괄적 면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 보완 - 문구정비 - 문구정비 (업권별 준용 약관 명확화) -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